

##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Lee Cheol-Ho

Nambu Univ.

####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 Abstract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This article deals with (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2)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 I. 서론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에서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1] 1972년 '정신 지체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국제 장애인의 해'(1981년)를 설정하고, 1982년에는 1983년부터 10년간 지속되는 'UN 장애인 10년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런 흐름에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명 존중, 생존권 및 사회 접근권, 기회 균등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깔려 있었다.[2] 또한 2006년 12월 13일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UN총회에서 채택되

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7년 3월 30일부터 시작된 서명개방에 참여하여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비준과 가입을 남겨 놓은 상태이며, 선택의정서는 서명, 비준, 가입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경과와 의의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경과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의 인권쟁취를 위한 저항이 커져갔고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 운동으로 구현되었다. 20세기말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쟁취노력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영역으로 확산·전개되어 왔다.[3]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년여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법안을 다듬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라는 장애인운동의 이념과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1년 2월 NGO인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와 서명운동 시작했고, 2002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했다. 2002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03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출범, 2003년 6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공청회 개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초안 작성, 2005년 4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동당과 법안 수정, 2005년 9월 20일 노회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2006년 3월 28일부터 장추련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2006년 8월 중순 청와대 측의 제안으로 정부부처와 장추련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민관공동기획단」 구성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고,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역시 같은 날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노회찬 의원의 발의 법안을 포함한 세 개의 법안이 2007년 2월 제265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일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동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6일 재석 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크게, ① 당사자주의, ② 연대주의, ③ 장애 관점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5]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여 쟁취한 성과물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6]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③ 장애 관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문제를 복지와 서비스 개념이 아닌 「인권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를 상층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III. 장애인의 인권

### 1. 장애인의 인권과 정상화(Normalization)

장애인의 차별 금지 법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7]이다. 정상화는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 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으로 시설 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상화의 이념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차별 금지의 법리로 나타난다.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 금지의 법리는 크게 ① 상이(相異)한 취

급 금지의 법리, ② 간접 차별 금지의 법리, ③ 적절한 배려의 법리를 내용으로 한다.

① 상이(相異)한 취급 금지의 법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결근이 잦다', '산업 재해의 발생이 염려 된다'는 등의 일반적인 통념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는 '상이한 취급'으로 간주된다. ② 간접 차별 금지의 법리란 형식상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상이한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화교환원을 채용하면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간접 차별에는 본인이 직접 차별하지는 않지만 차별 행위를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의하면 차별적 성향이 강한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것도 차별이다. ③ 적절한 배려의 법리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려는 휠체어 장애인을 보고도 '타시오'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차별이 된다. 적절한 배려는 소위 적극적 행동(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행위만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장애인의 교육 인권

장애인 인권 확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이 기본이다. 장애인 독립의 출발은 교육이다.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가서 교육받기를 원하면 학교에 갈 수 있고,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없어 집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면 집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애 아동의 '교육 인권'이다. 장애인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 측면에서도 「특수 교육 진흥법」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장애인의 교육 인권에 의한 장애 아동의 주체적 학습권(學習權) 인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장애 아동이 주어진 교육과정에 수동적(소극적)인 적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은 교육 인권을 일반교육에 확대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8]

### 2.1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의 교육권은 단순히 입학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반학생과 장애아동이 한 학교, 한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서었다.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였다.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2008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된다(동법 제3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보면, ①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③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등 기준도 강화되었다.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1995년 장애인특례입학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9]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화 되었다.

장애인교육은 정신적 특성, 감각능력, 신체운동 및 신체특성, 사회적 행동, 또는 의사교환능력이 보통 또는 정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이탈되어 있는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자료, 교육환경 등에 변화를 주어 가르치는 교육을 뜻한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은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교육의 장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0]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겠다는 인식이 사회에 보편화 될 때,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은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 2.2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대학별 장애인 특례입학 실태를 살펴보면, 전제대학 대비 특례입학 미실시 대학으로 현황은 국립대 총 44개 대학 중 68%인 30개가 특례입학 미실시, 사립대 총168개 대학중 미실시로 조사된 대학 69개(총조사된 대학 157개 대학중 99개 미실시)이다. 장애인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학교별 장애인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2006년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이 20명인데 비해 2006년 실제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수는 4명에 불과하다. 강릉대학교의 경우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함에도 2006년 모집인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는 고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참조), 국공립학교에서 약 5,000여명의 장애인 교사 일자리가 추가로 마련되었으나 현재 교육대학들은 장애인들을 맞이할 제반여

건이 미흡하다.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2006년 장애인특례입학 현황은 교육대학교 11개교 중 3개교(경인교대(2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3명))에서만 장애인 특례입학(총10명)을 실시 중이며, 사범대의 경우 40개교 중 13개교에서 175명의 특례입학이 실시 중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으로까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일부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떤 분야의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된다면, 정부는 그러한 장애인에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학 및 공공 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장애인 이동과 학습을 위한 기본 환경을 마련함은 물론,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장애인 특례 입학 전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향후 진로(직업) 상담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11]

### 3.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 이용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러한 규정은 두게 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가입상의 차별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들은 소비자이면서도 소비자의 지위를 박탈당해 왔다. 민간보험사들은 심신상실·박약자(정신지체장애인)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12]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보험회사의 장애차별관련 진정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32건)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3]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후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법부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확정됨). 이는 私保險처럼 契約自由의 原則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정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는 것과 회사측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시정에 있어서 획

기적 발전을 마련해 주었다.[14]

2008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재화·용역 이용권과 관련하여, 보호자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답송을 거절한 사례도 발생했다. 모(某)항공사가 특정 장애인에게 보호자 답송을 의무화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용역의 차별과 관련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자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가 신체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 또는 자격이 없다고 약관에 규정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하여 회원 가입자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는 것이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된다." [15]고 결정하였다.

### 4. 장애인의 노동권과 취업 문제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감소함으로 인해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인들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업재활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가는 ① 장애인이 동등한 고용기회의 보장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②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16]

노동 분야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차별이 제일 심한 분야이다. 모집, 채용, 승진, 해고 등 차별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 동안 장애인의 노동권은 일단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고용할당제와 노동의 진입에서 해고까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전반적인 사회의식이 장애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하는 풍토가 한 몫 더했다.[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된 영역 중 하나가 고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게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 평등을 지향한다. 반면에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 및 직업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특히 미국과 같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역사적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동정심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무고용제는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병존이 가능하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이며, 의무고용제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 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지만 비장애인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의무고용제에서는 장애가 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대상을 달리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필요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비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18]

장애인고용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직접 고용이 기본 원칙이나, 보완책으로 고용의무사업체의 간접 고용을 활용한 부담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접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상태다. 간접 고용을 활성화하자면 특례사회사 설립,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인정 등 간접 고용의 다양성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19] 고용의 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부담금을 걷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고용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로 도입해야 한다.[20]

## 5.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장애인 교육과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이나 경제, 문화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2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2005년 1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률 및 만족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보행로의 경우는 각종 장애물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해 연속적인 이동이 곤란하며, 불법주정차, 가로수, 지하철 통풍구 등으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관리가 크게 미흡한 편이다. 버스는 계단으로 인해 승하차가 불편하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저상버스 제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 6. 장애인의 성(性)의 권리

비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혼한 편견 중 하나는 장애인은 성욕도 없고 성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 가족, 심지어는 당사자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식욕도 없고, 밥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23] 사람들은 장애인을 천사처럼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이런 욕망에는 무관심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장애인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정신적 거세를 단행했는지도 모른다.

정신지체, 마비된 하반신, 신체 절단 등의 장애인을 보면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성불구(性不具)라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건전한 성적욕망이 존재한다. 결혼해서 가

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듯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지체장애자남성의 40%가 매매춘 경험이 있고, 또 영화 속처럼 '핑크 펠리스'를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55%나 나왔다고 한다. 지금껏 수많은 주위 시선들 때문에 자신의 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장애인들 사이에서 성 문제는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24]

인간에게 누구나 성이 있고 자신의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족이나 이 사회로부터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미혼 장애인 성문제는 그들이 똑같은 욕구를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25]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섹스 자원봉사[26] 또는 성매매의 허용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윤리적인, 문화적인, 법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IV. 맺음말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법제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등에 의한 의사표현 및 결정 능력이 취약한 성인이 최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고 잔존 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민법에서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도[27]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28]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

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사이에 있어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수요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보호기준만 제시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애인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29]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31]

#### ■ 참고 문헌 ■

- [1] 장애인의 권리는 이미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식량·의복·주택·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중략... 질병·장애(disability),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25조)고 규정되어 있다.
- [2]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2006), 55면.
- [3] 한국의 장애인 운동의 발자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1987~2006)』, 박종철출판사(2007) 참조.
- [4] 박병식,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월간 법제 (2007.12), 67면.
- [5]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2007. 4. 12), 37면 이하 참조.
- [6]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권리에 입각한 세계 최초의 장애인법이라는 면에서도 그 이율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중 입법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 [7] 유동철, "사회 속의 장애: 차별에서affirmative action으로", 김창엽 외, 앞의 책, 113~115면.
- [8]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 사회와 인권』, 나남출판(1998), 321면.
- [9] 대판 2003. 10.9. 2003다38337 판결.
- [10] 윤점룡, "장애인의 교육권",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II)』, 한길사(2000), 750면.

- [11] 2006년 9월 24일 한나라당 이주호 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용 참조.
- [12] 상법 제732조(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는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32건의 민간보험 장애차별 진정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은 2건이며,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는 8건이었다. 나머지 진정사건의 경우는 진정인 스스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이다(2008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14] 박중운 외,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218면.
- [15] 국가인권위원회 2005. 7. 19자 04진차381결정.
- [16] 나운환,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안분석 및 향후 전망", 2005 장애인정책분석서, (사)장애인단체총연맹(2005. 12), 67면 참조.
- [17]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산지니(2006), 68면.
- [18] 강동욱,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대상 조정방안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2007.10), 89-90면.
- [19] 심창욱, "장애인 고용, 다양한 방법 활용하자", 한겨레신문, 2006년 9월 30일, 23면 참조.
- [20]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산지니(2006), 85면.
- [21]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시초는 1984년 휠체어 장애인이던故 김순석씨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며 자살한 사건이었다. 이후 1999년 혜화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건, 2002년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2003년 송내역 선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전체 장애인계의 이슈가 되었다.
- [22] 구자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내용,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 학술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7.12.11~12), 85~87면 참조.
- [23] 조윤경, 『조윤경의 핑크 스튜디오』, 일송북(2008), 174면.
- [24] 쿠키뉴스, 한국 장애인의 성, 참담한 수준... "우리도 성욕망 있다", 2006년 4월 20일.
- [25] 서동일, "영화를 통해 본 미혼 장애인 성문제", 2005년 성재활 세미나 「미혼 성인 장애인 성문제」 자료집, 국립재활원(2005.10.12), 38면.
- [26] 섹스자원봉사란 스스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의 성욕을 해결해주려는 사회, 혹은 개인의 활동이다. 따라서 섹스 자원봉사는 자위를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포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섹스 자원봉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와이 가오리(河合香織), 『섹스 자원봉사』, 아롬(2005) 참조.
- [27] 成年後見制度에 대한 연구로는 백승훈, "成年後見制度에 관한 研究:立法論的 提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및 같은이,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2005) 참조.
- [28]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2007), 301면.
- [29] 이흥재, "障 碍 人 人 權 的 社 會 法 的 保 障", 『障 碍 人 福 祉 法 制』 법무자료 제122집, 법무부(1989), 15면.
- [30] 박중운 외, 앞의 논문, 221면.
- [31]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2006), 272면.